

# 2024학년도 의과대학 외래교수 초빙 공고

전북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학생 강의 및 실습을 담당할 외래교수를 아래와 같이 초빙하고자 합니다.

## 1. 지원 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가. 「고등교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조교수 이상 자격 기준을 갖춘 자  
※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 참고(3~5페이지)
- 나. 위촉기간 중(2024. 6. 1. ~ 2025. 5. 31.) 만 65세 미만인 자
- 다. 의학사 이상의 학위 소유자
- 라. 학생 통합강의 및 임상실습에 참여하는 전북대학교병원 임상교수이거나 외부 의료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학생 책임자

## 2. 담당 업무

- 가. 학생 강의 및 실습(특별강의, 세미나 포함)
- 나. 본교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 다. 대내 외 교류 협력 증진 활동

## 3. 초빙 인원

- 000명

## 4. 초빙 기간

- 2024. 6. 1. ~ 2025. 5.31.(1년)

## 5. 제출 서류

- 가. 외래교수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나. 학력 및 경력증명서 각 1부
-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 라.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1부(서류합격자에 한하여 추가 제출)

## 6. 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 4.23.(수) ~ 2024. 4.30.(화) 18:00

다. 접수방법 : 우편 및 택배 접수, 방문 접수, 대리인 접수(온라인 접수 불가)

※ 우편 접수의 경우 우체국 및 택배사로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행정실로 도착하는 서류에 한하여 인정

라. 접수처 :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행정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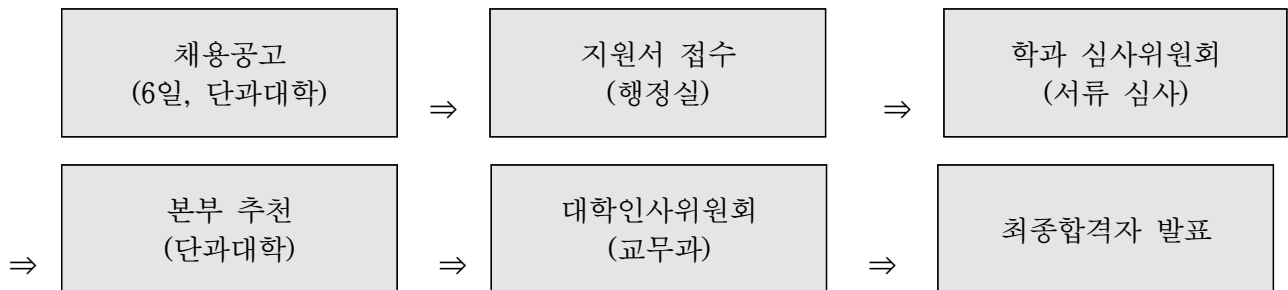
(54907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본관 1층)

담당	전화번호	FAX 번호	E-Mail
교무업무 담당자	063-270-3063	063-270-3053	hanni2000@jbnu.ac.kr

## 7. 채용 일정

가. 합격자 발표 : 2024. 5월 중순(예정)

나. 채용 절차(흐름도)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교원 및 조교의 자격기준**(제2조, 제2조의2, 제3조, 제4조, 제4조의2  
및 제11조 관련)

(단위: 년)

연구·교육 경력연수 직명	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전문대학졸업자·동등자격자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연구실적 연수	교육경력 연수	계
교수	4	6	10	5	8	13
부교수	3	4	7	4	6	10
조교수	2	2	4	3	4	7
강사	1	1	2	1	2	3
조교	근무하려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학력이 있는 사람					

비고: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 중 어느 하나가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의 합계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면 자격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연구실적연수환산율 산출기준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1]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함) 제4조제1항제2호의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한 연구기관이나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시설에서 전임으로 연구에 종사한 실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수로 근무한 경력</li> <li>2. 사관학교의 교관(부교수 이상의 교수에 한함)으로 근무한 경력</li> <li>3. 다음 각 목의 연구원 등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li> <li>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li> <li>다.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연구기관</li> <li>라.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체로서의 연구기관</li> </ul> </li> <li>4. 박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 및 박사 재학기간(석·박사 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5. 석사학위 과정 이수자가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li> </ol>	100%
<p>[2] 규정 제4조제1항제3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시설에서 연구를 주로 하거나 전문학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종사한 실적’</p>	6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력인정을 받지 못한 전문대학 이상의 각종학교에서 전임교원으로 근무한 경력</li> <li>2.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시간강사, 초빙교원, 겸임교원 등 교육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간강사는 주당 5시간이하는 30%, 주당 5시간 초과시에는 시간당 10% 가산하되 50%를 넘지 못함.</li> <li>② 비전임교원은 상근인 경우는 100%, 비상근인 경우는 시간강사 경력에 준해서 인정함</li> </ul> </li> </ol>	7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3. 중·고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li> <li>4.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부합되는 경우</li> <li>5. 초등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li> <li>6. 유치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과목과 연계되는 경우</li> <li>7.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의 발령에 의하여 조교로 근무한 경력</li> <li>8. 공인된 체육단체(공인단체의 체육팀 포함) 및 각 대학의 체육코치</li> <li>9.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자로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기간(석·박사과정을 합하여 5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10. 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로서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자의 석사과정 재학기간(2년을 초과하지 못함)</li> <li>11. 외국인으로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목적으로 전일제(주당 15시간 이상 시간제 포함)로 근무한 경력이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과 연계되는 경우</li> </ol>	70%

경 력 내 용	환산 인정률
<p>[3] 규정 제4조제1항제4호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업체에서 전공학과 및 그에 관련되는 학과의 학문분야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한 경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국영기업체 또는 공공단체)에서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2. 법학실무교원으로 지원한 자가 판사·검사·변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3.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라 지정받은 지정교육기관 중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자로서 1급 이상 해기사 면허 소지자의 국제항해 승선경력 및 「항공법」 제29조의3에 따라 지정받은 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에서 비행교육에 종사한 경력</li> </ol>	100%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를 국가기관(시설 및 군경력 포함)에서 당해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직무에 전임으로 종사한 경력</li> <li>5. 다음 각 목의 민간 산업체에서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경력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관으로서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li> <li>나. 공업, 기타 제조업, 광업, 운송업, 건설업종 이외의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관임을 공공기관이 확인한 업체</li> </ol> </li> <li>6. 판사·검사로 근무한 경력</li> <li>7.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변리사·건축사의 개업기간</li> <li>8. 「국가기술자격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서 실무에 종사한 경력이 대학 또는 대학원의 전공과목과 근무경력이 부합되고 전문대학교원으로서 담당할 과목이 이에 연계될 수 있는 경우</li> <li>9.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턴 또는 레지던트로 근무한 경력</li> <li>10.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포함),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포함),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 포함) 또는 수의과대학(수의학부 포함) 졸업자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동물병원 개업기간</li> <li>11. 국가, 공공단체 또는 해당 학교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전문의로 근무한 경력</li> <li>1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병원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전임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li> <li>13. 신학대학 졸업자가 목사 또는 신부로 재직하거나, 대학 불교학과 졸업자가 사찰에서 승려로 재직한 경력</li> <li>14. 외국공관에서 근무한 경력</li> <li>15. 공인된 상설 예·체능 및 창작·실기에 관한 단체의 주요간부 근무경력</li> </ol>	70%

[별지 제1호 서식]

## 외 래 교 수 위 촉 추 천 서

인적 사항	성명	한글		주민등록번호		
		한자		연 락 처		
		영문		E - MAIL		
	본직기관명			직위(급)		
	주 소		도로명주소 기재			
학 력	출 신 학 교		입학일자	졸업일자	전 공	학 위 명
	대 학		0000.00.00.	0000.00.00.		
	대학원	석사				
		박사				
주요 경력	근무기간		경 력 사 항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0000.00.00.				
임 용 신청 내용	대 학		의과대학	학 과	의학과	
	임 용 기 간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활용 계획						

위와 같이 외래교수를 추천하오니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의과대학장    [직인]

#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전북대학교 외래교수 위촉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학력·성적증명서, 경력(재직)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주민등록 등본, 채용 신체검사서, 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외래교수 위촉	영구보존

지원자는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대학 외래교수 위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외래교수 결격사유(신원조회) 장애사항	외래교수 결격사유 확인	영구보존

지원자는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대학 외래교수 위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자격증번호	외래교수 위촉	영구보존

지원자는 위의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대학 외래교수 위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학력 조회 기관 전(경)력 조회 기관 결격사유(신원조회) 조회 기관 비위면직 사실 조회 기관	외래교수 위촉자의 인사 검증	성명, 출신학과, 생년월일, 입학·졸업년월일, 학위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근무부서, 입사일, 퇴사일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구보존

지원자는 위의 개인정보 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우리대학 외래교수 위촉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2024년      월      일      성명 :      (인 또는 서명)

전북대학교총장 귀중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전북대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전주덕진경찰서장 귀하

### 유의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